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Trustee)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에 관한 고찰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I. 서론

올바른 도산제도는 회생가능한 채무자의 자력 갱생을 도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용을 줄이고, 노동력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도산제도의 남용은 도덕적 해이발생과 소명의식의 저하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불불능에 처한 과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등 자력갱생을 돕기 위한 회생절차의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청산절차인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손쉽게 과채무를 해소하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회생절차와 청산절차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어 개인이 여러 가지 제도·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채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파산 및 면책을 쉽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파산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채권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지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에 시행되었던 소비자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인 소비자의 과채무와 개인파산의 증가라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던 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도산법 제도의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연방도산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통합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본고는 미국의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



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함으로써 통합도산법의 정비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미국 연방도산법 개관

미국의 연방도산법은 영국의 1723년 파산법을 근간으로 하여 5년의 한시법으로 1800년에 최초로 마련되었다.¹⁾ 도산에 관한 법이 각 주마다 다르다는 점은 연방헌법상의 주간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과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따로 도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²⁾ 그 후, 1841년, 1867년, 1898년에도 연방도산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들은 그때 그때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가 위기상황이 종료하면 즉시 폐지된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에서 항구적인 성격의 도산법은 1898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게 되었다.³⁾ 1898년의 도산법은 그 후 폐지논쟁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개정

을 거치면서 존속되다가, 1978년 연방개정도산법(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이 제정되어 구도산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1978년의 법은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이라 통칭되고, 1898년의 법은 이와 구별하여 구연방도산법(Bankruptcy Act)이라 통칭된다.

1978년의 연방도산법은 그 후에도 1984년, 1986년, 1990년, 1994년, 그리고 2005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

TITLE 11-BANKRUPTCY

- CHAPTER 1-General Provisions
- CHAPTER 3-Case Administration
- CHAPTER 5-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
- CHAPTER 7-Liquidation
- CHAPTER 9-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1) Bankruptcy Act of 1800 ch. 19, 2 Stat. 19(1800) (repealed 1803).

2) 미국 연방헌법은 Article I, Section 8에서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과 관련된 사항은 연방의회에 배타적인 전권(Exclusive Plenary Power)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연방헌법상의 주간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이라 한다. 이는 연방의회가 가지는 대단히 광범위한 권한으로서 주내의 통상이든, 주간 통상이든, 양자 모두에 해당하든 그 지역적인 경계를 묻지 않고, ① 주간통상이 영위되는 장소(Channels; Places) - 예를 들면, 고속도로, 인터넷, 수로 등, ② 주간통상을 위한 도구·시설(Instrumentalities; Facilities)과 그와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 - 예를 들면, 트럭, 배, 전화, 인터넷, 비행기, 전기, 보험, 라디오 주파수 등, 또는 ③ 기타 주간통상에 상당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Substantial Economic Effect)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행위(Any Activity)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Federal Law)의 규제를 받고,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주법(State Law)이 있다면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연방법률이 주법에 우선하게 된다. 다만, 연방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법의 규제를 받는다.

3) Bankruptcy Act of 1898, ch. 541, 30 Stat. 544(1898), amended by Chandler Act, ch. 575, 52 Stat. 840(1938), (repealed 1978).

4) 1978년까지의 파산법의 개정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등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의 개정이었다면, 1984년 개정부터 2005년에 이르는 개정은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의 주안점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 CHAPTER 11-Reorganization
- CHAPTER 12-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 CHAPTER 15-Ancillary and Other Cross-Border Cases

1. 개요

미국 연방도산법은 미국법령의 제11편(Title 11 U.S.C.)으로서 9개의 장(Chapter 1, 3, 5, 7, 9, 11, 12, 13,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 3, 5장은 뒤에 규정된 6가지 종류의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7, 9, 11, 12, 13장은 각 종류의 도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추가된 제15장은 각 종류의 도산절차에 부수하는(ancillary) 조항과 국제도산사건(Cross-Border Cases)에 관한 규정이다.

Chapter 1은 정의규정, 해석의 기본원칙, 각 장의 적용범위 및 도산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채무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Chapter 3은 절차의 개시신청, 도산관재인 및 기타 전문가의 이용, 채권자집회(Meeting of Creditors) 등 도산절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Chapter 7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Liquidation),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 Chapter 11은 기업의 회생절차,⁵⁾ Chapter 12는 가족경영농업인의 회생절차, Chapter 13은 정기적 연수입이 있는 개인의 회생절차이다.

2. 청산절차와 회생절차

(1) 청산절차

우리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하는 Chapter 7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도산신청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추심행위나 담보권실행행위가 자동적으로 중지(Automatic Stay)⁶⁾된다. Chapter 7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도산하면 도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도산재단(Estate)⁷⁾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이외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인도받



5) Chapter 11은 영업, 즉 기업의 회생을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만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자도 이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문제로 개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6) 11 U.S.C. §362.

7)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도산절차의 개시이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을 신청하는 비자발적 신청사건이건, 일단 도산법상의 절차가 개시되면 재단(Estate)이 창설된다. 11 U.S.C. §541(a). 재단은 채무자와는 별도의 법적 존재로서 채무자의 재산은 재단에 인도되어, 청산사건에서는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회생사건에서는 회생의 기초가 된다. 재단이 창설되면 채무자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도산절차가 개시되면서 박탈당하게 된다. Chapter 7의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재단이 창설되면 채

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법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Chapter 7의 채무자는 대개 무자산(No-asset) 사건이므로 대부분의 채권자, 특히 순위가 낮은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든가 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희생절차

연방도산법 중 Chapter 11, 12, 13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각각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지던 도산절차 개시신청 전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유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Chapter 7상의 절차와 대비된다.

Chapter 11은 기업의 희생절차이다. 일정한 다수결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를 만족시키

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Chapter 12는 1980년대 초에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미국 농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자 이를 덜어주기 위해 1986년 도산법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절차로서, 가족경영농업인(Family Farmer)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가족경영농업인이란 가족이 자연인으로서 또는 가족소유 회사의 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다.⁸⁾ 대부분의 가족경영농업인은 채무액수가 너무 커서 Chapter 13의 채무자가 될 자격을 갖지 못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Chapter 11은 이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많은 경우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pter 12를 신설하여 도산에 직면한 가족경영농업인에게 채무를 재조정하고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Chapter 13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의 조정과 회생에 관한 절차로서 Chapter 11보다 단순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파산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무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및 기타 재산을 모두 도산관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Chapter 11의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점유계속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만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더불어, 채무자와 거래하는 자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재단이 창설됨과 동시에 Chapter 7의 채무자는 새로이 수익을 얻거나 기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득한 재산과 재단에서 제외된 재산 및 도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은 채무자의 '새출발(Fresh Start)'의 기초가 된다. 도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11 U.S.C. §541(a)(1)-(7)에, 도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11 U.S.C. §541(b)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8) 11 U.S.C. §101(18).

(3) 절차의 선택

채무자는 위의 여러 유형의 도산절차 중 특정한 절차의 적용을 강제받지는 않는다. 각 장의 절차개시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그 중 어떤 종류의 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청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할 것인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연방도산법은 회생 절차를 선호하여 채무자가 청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시 여러 가지 회생절차 중 몇 장의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2005년의 개정법: Chapter 15의 추가

2005년 4월 20일 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이 연방파산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⁹⁾에 서명하여 동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됨으로써 1978년 연방도산법 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2005년의 개정은 연방도산법의 소비자 및 기업의 도산규정의 일부개정뿐

만 아니라,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 규정¹⁰⁾을 신설하는 등 도산제도 전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4. 도산법원(U.S. Bankruptcy Courts)

연혁적으로는 1898년의 연방도산법에서 처음으로 도산심리인(Refree in Bankruptcy)에 의해 주재되는 도산법원이 설치되었다.

도산관련 문제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서는 도산에 관한 규정인 미국법령 제11편(Title 11 U.S.C.)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인 미국법령 제28편(Title 28 U.S.C.)에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과 도산법원(Bankruptcy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산법원은 상당히 애매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94개소에 달하는 각각의 연방지방법원이 도산관련 문제를 다루고, 대부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은 도산법원이 접수한다. 다시 말하면, 도산법원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연방사법제도의 일환이 아니고 연방지



9) 주요개정내용에 관하여는 [http://www4.law.cornell.edu/uscode/11/]과 [http://www.sdb.uscourts.gov/BankruptcyUpdates/2005/overview%20of%20bankruptcy%20code%20changes.pdf] 참조. 주요개정내용의 개관과 이중 연방관재인제도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후술함.

10) 2005년에 신설된 Chapter 15 국제도산절차는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이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 - 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 제595호(2006.4.), 171쪽 주 1 참조).

방법원의 하나의 '부(Unit)'이며, 도산법원이 도산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연방지방법원이 사건을 위탁(reference)하기 때문이고, 연방지방법원의 최종적인 통제권하에서 기능을 한다. 도산법원 판사는 도산절차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는 반면, 도산사건의 일상적인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채무자, 연방관재인(U.S. Trustee), 선임된 도산관재인, 조사인(Examiner), 채권자위원회(Creditors' Committee)에 일상적인 관리를 위임한다.

III.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Trustee)¹¹⁾의 지위와 역할

1. 개요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 채권자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표하고, 도산재단(Estate)을 관리하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는 등 공정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선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산관재인은 도산절차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서, 도산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을 관리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업무를 조사하고, 도산재단의 권리를 실행하며, 도산재단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Chapter 9나 Chapter 11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도산절차에 도산관재인이 선임된다. Chapter 9나 Chapter 11의 절차에서도 재단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이 선임되기도 하지만 Chapter 11의 회생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채무자가 점유계속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보통의 도산관재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¹²⁾ 따라서 법문상 도산관재인이란 용어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Chapter 11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점유계속채무자로 대체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Chapter 11의 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대신 조사인(Examiner)을 선임하기도 한다.¹³⁾

도산관재인은 채권자 또는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선임한다. Chapter 7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Chapter 7을 제외한 다른 장의 절차와 Chapter 7 절차이지만 채권자가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도산관재인을 선임한다. 연방관재인은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Panel of Trustees)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명부에서 무작위로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한



11) 1898년 연방도산법에서 처음으로 채권자가 선임하는 도산관재인제도를 두었다.

12) 11 U.S.C. §1107(a).

13) 11 U.S.C. §1104(c).

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도산관재인명부에 기재될 것을 희망하는 개인이 도산관재인 후보자가 된다.

도산관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연방도산법은 단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 또는 정관상 도산관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사는 도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¹⁴⁾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미국법령 제28편(Title 28)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⁵⁾

위와 같은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외에, 도산관재인은 연방관재인이 정하는 보증금(Bond)을 제공하여야 한다.¹⁶⁾ 보증금은 도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의 제공은 선임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시에 공식적으로 임무가 게시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도산관재인은 그가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 소요된 시간,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시장요율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¹⁷⁾ 미국법령 제11편 제326조는 재단이 배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산관재인이 받을 보수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산재단의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재단의 관리비용채권에 속한다. 그러나 도산절차의 마지막 날에 도산재단에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은 사건당 \$60만을 받을 수 있다.

2. 제7장(Chapter 7)의 도산관재인

Chapter 7 절차에서는 일정한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Meeting of Creditors)에서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선임한다. 이러한 도산관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산재단(Estate)을 청산(liquidation)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1) 선임방법

1) 임시도산관재인(Interim Trustee)

도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어 직무를 개시하므로 그 이전에 재단을 관리할 자를 두기 위하여 연방관재인(U.S. Trustee)



14) 11 U.S.C. §321.

15) 미국법령 28 U.S.C. §586(d)는 법무부장관이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는 정직성, 공정성, 전문적 능력(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일반적 능력과 경험의 요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연방관재인이 선임하는 도산관재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권자가 선임하는 도산관재인의 경우에는 연방도산법, 즉 미국법령 제11편 11 U.S.C. §321의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16) 11 U.S.C. §322(a).

17) 11 U.S.C. §330.



이 임시도산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채무자가 도산을 신청하는 자발적 신청사건 (Voluntary Petition)에서는 절차개시신청이 제출된 직후에 임시도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채권자가 도산을 신청하는 비자발적 신청사건(Involuntary Petition)에서는 법원이 구제명령(Order for Relief)을 내린 후에 선임된다. 비자발적 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의 구제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재단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임시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¹⁹⁾

임시대산관재인은 도산관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도산관재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도산관재인의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시도산관재인이 도산관재인이 된다.

2) 도산관재인(Permanent Trustee)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²⁰⁾는 절차개시신청 후 최초의 채권자집회에서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방관재인(U.S. Trustee)은 구제명령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에 최초의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²¹⁾

(2) 역할

Chapter 7 절차에서 도산관재인의 역할은 도산재단을 청산하여 이를 분배하는 것이다.²²⁾ Chapter 7 절차의 목적은 가능한 신속하게 재단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관재인이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는 있지만,²³⁾ 장기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재단의 청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hapter 7 절차상의 도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역할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채무자의 재정상황(financial affair)을 조사하고,²⁴⁾ 채권을 조사하여



18) 11 U.S.C. §701.

19) 11 U.S.C. §303(g).

20) 채권자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11 U.S.C. §702에서 명시하고 있다.

21) 11 U.S.C. §341(a). 그러나 Chapter 7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는 연방관재인이 도산관재인을 임명한다.

22) 11 U.S.C. §704.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는 모든 채무와 자산에 관하여 상세한 목록을 준비해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재인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관재인은 법원의 고용인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U.S.C. §707(b).

23) 법원은 도산관재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재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재단의 순조로운 청산과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도산관재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1 U.S.C. §721.

24) 11 U.S.C. §704(a)(4).

이의를 제기하며,²⁵⁾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²⁶⁾ 것 등이다. 법원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²⁷⁾ 법원과 연방관재인에게 도산재단의 관리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²⁸⁾

3. 제12장·제13장(Chapter 12·13)의 도산관재인

Chapter 12와 Chapter 13의 채무조정절차(Adjustment of Debts)에서도 도산관재인이 선임되지만 선임방법이나 역할은 Chapter 7 절차와 차이가 있다.

(1) 선임방법

Chapter 7 절차에서와는 달리 Chapter 12와 Chapter 13 절차에서는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즉시 도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도산관재인제도는 없고, 채권자가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제도도 없다. 각 주(State)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산관재인이 각 사건별로 지명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건의 양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연방관재인이 미국법령 제28편 제586조(b)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의 모든 Chapter 12와 Chapter

13 사건을 관장하는 1인 이상의 상설도산관재인(Standing Trustee) 또는 부연방관재인(Assistant U.S. Trustee)을 임명할 수 있다.

(2) 역할

Chapter 12와 Chapter 13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단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계획안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산관재인의 중심적인 역할은 재단재산의 환가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부인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의 지급계획안의 실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Chapter 11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점유계속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영업을 계속하며 다른 장 절차에서의 도산관재인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데 반하여, Chapter 12와 Chapter 13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Chapter 11 절차와는 달리 도산관재인의 감독을 받는다. 즉, Chapter 13의 채무자가 도산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도산관재인의 감독하에서 계속적으로 경업을 한다. Chapter 12에서도 점유계속채무자 개념이 인정되지만, 이 역시 도산관재인의 감독하에 농업경영을 계속한다.



25) 11 U.S.C. §704(a)(5).

26) 11 U.S.C. §704(a)(6).

27) 11 U.S.C. §704(a)(7).

28) 11 U.S.C. §704(a)(10).

4. 제11장(Chapter 11)의 도산관재인

Chapter 11의 회생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신, 채무자가 점유계속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법원과 채권자위원회(Creditors' Committee)의 감독하에서 도산관재인의 역할을 한다.²⁹⁾ 연방도산법에서 '도산관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Chapter 11 절차에서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점유계속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 선임방법

Chapter 11 절차에서는 대개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지만, 법원은 점유계속채무자의 사기, 부정직 또는 부적임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연방관재인이 신청과 이에 따른 통지와 청문절차(Notice and Hearing)를 거쳐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명령할 수 있다.³⁰⁾ 법원의 도산관재인 선임 명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연방관재인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도산관재인을 선임한다.³¹⁾ 도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점유계속채무자는 더 이상 재단을 관리할 수 없다.

(2) 역할

Chapter 11은 Chapter 12 · Chapter 13 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점유계속채무자의 역할은 재단의 사업을 운영하고 Chapter 11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완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3) 조사인(Examiner)

도산관재인 선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도산관재인의 선임 대신 조사인(Examiner)의 선임을 명령할 수 있다.³²⁾ 이해관계인이나 연방관재인이 조사인의 선임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조사인의 선임이 채권자, 지분증권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채무자의 상품, 용역, 조세 또는 내부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무담보채무가 \$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래 조사인은 점유계속채무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계속채무자의 행위와



29) 즉, Chapter 11 절차에서 점유계속채무자는 보수청구권과 그 외의 일부 권한을 제외하고 도산관재인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11 U.S.C. §1107(a). 도산관재인의 역할 중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 등은 점유계속채무자가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기능은 채권자위원회가 담당한다.

30) 11 U.S.C. §1104(a).

31) 11 U.S.C. §1104(b).

32) 11 U.S.C. §1104(c).

재정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선임되지만, 법원은 그 역할을 확대하여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에는 조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에게 도산관재인의 역할의 일부를 맡길 수도 있다.

IV. 미국 연방도산법상 연방관재인(U.S. Trustee)³³⁾의 지위와 역할

1. 연방관재인(U.S. Trustee)의 주요역할

(1)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의 의의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는 미국 법무부의 한 구성요소로서 연방도산법원의 판사가 도산절차의 행정적 관리를 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도산관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일반인의 불신을 해소하여 도산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방관재인의 의무와 역할은 미국법령 제28편 제581조 내지 제589b조(Title 28 U.S.C. §581~§589b)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연방도산법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³⁴⁾ 도산관재인을 선

임하며, 도산관재인의 직무를 감독하여 재단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연방도산법상 신청된 각 도산사건의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연방검사(U.S. Attorneys), 연방수사국(F.B.I.) 및 기타 법집행기관과 협조하여 도산사기 및 도산신청의 남용을 발견해내고, 그 조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제7장(Chapter 7)의 연방관재인

현재 대부분의 도산절차는 기업보다는 개인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소비자 도산사건은 Chapter 7이나 Chapter 13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³⁵⁾

Chapter 7 절차에서 연방관재인은 도산절차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① 도산절차의 '상당한 남용(Substantial Abuse)'이라고 판단될 만한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② 채무자의 변호인이 청구한 과도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③ 도산사건신청을 대행·대리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관행 -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무자의 도산사건신청을 대행하면서 비용을 청구하



33) 1978년 연방도산법을 개정할 당시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가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고, 1986년 개정법에서 전국적인 실시가 규정되었다.

34) 연방관재인은 최대 1년 동안 유효한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그 기간은 연방관재인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

35) Chapter 7의 도산사건신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Chapter 13의 신청은 30%를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는 것 등 -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연방관재인은 도산재단을 관리하는 Chapter 7상의 도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감독한다. 즉, 도산관재인의 도산재단에 대한 관리를 감독하고,³⁶⁾ 도산관재인이 행하는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대한 기록을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이 그 밖의 수탁자로서의 의무(Fiduciary Duties)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13장(Chapter 13)의 연방관재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Chapter 13의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빚을 변제하게 하고 회생을 돕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Chapter 13 도산절차는 연방관재인이 임명한 상설도산관재인(Standing Trustee)에 의해 진행된다.

Chapter 13상의 연방관재인의 구체적인 의무와 역할은 Chapter 7 절차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제11장(Chapter 11)의 연방관재인

주로 기업과 관련된 도산절차로서 일반적으로

Chapter 11 절차상의 연방관재인의 역할은 미국 법령 제28편 제586조에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긴급명령(First Day Orders)

연방관재인은 Chapter 11의 도산절차 초기에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긴급 구제명령 요청을 검토하여 채무자의 요구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긴급 구제금융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를 지불하기 위하여 법원의 즉각적인 구제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명령은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차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방관재인은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이러한 승인요구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

2) 관선위원회(Official Committee)

연방관재인은 당해 도산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관선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며, 관선위원회의 행위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보통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관선위원회는 그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채권자그룹³⁷⁾을 가지고 있



36) 이러한 감독의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① 도산관재인이 작성하는 도산사건신청보고서, 예산보고서, 금융계좌정보, 도산재단에 대한 관리능력, 법정에서의 역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② 도산관재인이 보증금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며, ③ 도산관재인의 실제 필요경비와 연봉의 상한액을 결정한다. 또한, ④ 도산관재인을 교육·훈련시키고, ⑤ 도산재단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기금을 감시한다.

37) 예를 들어, 무담보채권자, 담보권자 또는 증권보유자 등이다.

다. 연방관재인은 감독권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의해서 고용된 전문가들 - 예컨대,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 - 을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3) 회생계획과 공시(Reorganization Plans and Disclosure Statements)

연방관재인은 도산절차의 당사자가 제출한 회생계획과 공시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4) 법과 그 절차의 준수 확보(Ensuring Compliance)

연방관재인은 필수적인 보고서, 일람표(명세표) 및 비용 등이 적시에 제출되었는지, 채무자가 연방도산법과 채권자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게 그의 재산을 운영하는지를 감독한다.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라 함은 도산사건의 당사자가 채무자의 회생경과를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채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보고서, 납세신고, 비용·지출의 일람표 및 보험증권 등이 있다.

5) 부당한 절차지연의 방지(Preventing Undue Delay)

연방관재인은 도산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³⁸⁾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전문가의 고용(Professional Employment)

연방관재인은 당해 도산절차를 대행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제출한 도산신청과 보수³⁹⁾ 및 비용상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도산절차를 대행하고 도산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전문가들이라 함은 변호사, 회계사, 경매인, 투자상담사 및 부동산 중개인 등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한 법률회사(law firm)가 Chapter 11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의뢰인의 일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도 연방관재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도산사기(Fraud)

연방관재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법상의 구성요건 해당행위, 사기행위 및 도산절차의 남용행위를 조사하여 민법상의 벌금 및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을 연방검사(U.S. Attorney)에게 송부하여 형사상의 조사와 기소를 도모할 수 있다.

2. 조직과 구성

연방관재인(U.S. Trustee)과 부연방관재인(Assistant U.S. Trustee)⁴⁰⁾은 법무부장관(Attor-



38) 예를 들면, 당해 도산사건의 불필요한 기간 또는 각하신청, Chapter 7 절차로의 전환신청 또는 도산관재인의 선임신청 등.

39)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정정보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실행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회생계획을 작성해주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

40) 법무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연방관재인을 각 지역(region)에서 임명할 수 있다. 28 U.S.C. §582(a).



ney General)이 임명한다.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무국(Executive Office)⁴¹⁾과 21개 지역(Region)의 연방관재인 사무소(U.S. Trustee Office) 및 Alabama주와 North Carolina주를 제외⁴²⁾한 연방지방법원의 관할(Federal Judicial District)하에 있는 95개 지역에 위치한 분사무소(Field Office)⁴³⁾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The Execu-

tive Office for U.S. Trustee; EOUST)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연방관재인제도의 일반적인 정책과 법률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제도의 시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등 각 연방관재인이 연방도산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운영적 지원을 담당한다.

연방관재인제도는 주로 연방도산절차를 신청한 각 당사자와 기업이 납부한 요금으로 구성되



- 41) 21개 지역(Region) 연방관재인 사무소(U.S. Trustee Office): Region 1(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Region 2(뉴욕, 뉴욕 주), Region 3(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주), Region 4(컬럼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Region 5(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주), Region 6(댈러스, 텍사스 주), Region 7(휴스턴, 텍사스 주), Region 8(메μφ리스, 테네시 주), Region 9(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주), Region 10(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주), Region 11(시카고, 일리노이 주), Region 12(시더래피즈, 아이오와 주), Region 13(캔자스시티, 미주리 주), Region 14(피닉스, 애리조나 주), Region 15(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 Region 16(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Region 17(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Region 18(시애틀, 워싱턴 주), Region 19(덴버, 콜로라도 주), Region 20(워치타, 캔자스 주), Region 21(애틀랜타, 조지아 주).
- 42) 1986년 개정연방도산법에서 연방의회는 앨라배마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관해서는 도산관리인제도(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를 두었다. 이 2개 주에서 도산관리인은 도산사건의 행정을 감독하고, 도산관재인 후보자명부를 작성·유지하며, 각 당사자의 행위와 거래내역을 감시하는 등 그 역할면에서는 연방관재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앨라배마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산관리인제도(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는 법무부의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와는 별개이다.
- 43) 대부분의 분사무소(Field Office)는 부연방관재인에 의하여 운영된다. 다음은 연방관재인제도상의 21개 지역에 해당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이다: Region 1(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 로드아일랜드 주), Region 2(코네티컷 주, 뉴욕 주 (Eastern, Northern, Southern & Western Districts), 버몬트 주), Region 3(델라웨어 주, 뉴저지 주, 펜실베이니아 주 (Eastern, Middle & Western Districts)), Region 4(메릴랜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웨스트버지니아 주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Region 5(루이지애나 주 (Eastern, Middle & Western Districts), 미시시피 주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Region 6(텍사스 주 (Eastern & Northern Districts)), Region 7(텍사스 주 (South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8(켄터키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테네시 주 (Eastern, Middle & Western Districts)), Region 9(오하이오 주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미시간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10(일리노이 주 (Central & Southern Districts), 인디애나 주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Region 11(일리노이 주 (Northern District), 위스콘신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12(아이오와 주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미네소타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Region 13(아칸소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네브래스카 주, 미주리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14(애리조나 주), Region 15(캘리포니아 주 (Southern District), 하와이 주, 괌, Northern Mariana Islands), Region 16(캘리포니아 주 (Central District)), Region 17(캘리포니아 주 (Eastern & Northern Districts), 네바다 주), Region 18(알래스카 주, 아이다호 주(exclusive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몬타나 주(exclusive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오레곤 주, 워싱턴 주 (East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19(콜로라도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 Region 20(캔자스 주, 뉴멕시코 주, 오클라호마 주 (Eastern, Northern & Western Districts)), Region 21(조지아 주 (Middle,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플로리다 주 (Middle, Northern & Southern Districts), 푸에르토리코, U.S. Virgin Islands).

는 ‘연방관재인조직기금(U.S. Trustee System Fund)’에 의해 운영되며,⁴⁴⁾ 각 연방관재인과 부연방관재인의 보수는 미국법령 제5편 제5315조 내지 제531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미리 정해 놓는다.⁴⁵⁾

3. 도산법원과의 관계

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사법적 측면에 관여하는 데 반하여, 연방관재인은 절차의 행정적인 관리 측면을 감독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연방관재인은 도산법원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연방공무원이다.

연방관재인과 도산법원의 관계는 연방관재인 제도를 두게 된 이유에서 잘 나타난다. 구법, 즉 1898년에 제정된 연방도산법(Bankruptcy Act)에 의하면, 도산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조사에 참여하며, 기타 절차의 진행을 감독하는 등 현재의 연방관재인이 담당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했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행정적인 관리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사법적 기능이 침해되고, 도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서 바로 그 법원이 선임하고 감독하는 도산관재인이 일

방당사자가 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소송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1978년 현재의 연방개정도산법(Bankruptcy Code)에서 관리와 감독기능을 연방관재인에게 맡기고, 도산법원의 역할은 절차의 사법적인 측면에만 한정시킴으로써 관재인의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재판 외의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2005년 개정법 중 연방관재인제도와 관련된 주요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도산법은 지난 2005년의 개정으로 Chapter 15의 국제도산절차의 추가뿐만 아니라 도산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쳤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① 채무자의 도산신청 전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의무화,⁴⁶⁾ ② 자동중지(Automatic Stay)를 노린 도산절차의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⁴⁷⁾ ③ 재면책(Serial Filings & Discharge) 금지기간의 연장,⁴⁸⁾ ④ 채무재확인합의(Reaffirmation Agreements)⁴⁹⁾의 유효성 요건의 추가,⁵⁰⁾ ⑤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확대,⁵¹⁾



44) 28 U.S.C. §589a.

45) 28 U.S.C. §587.

46) 11 U.S.C. §109(h)(1).

47) 11 U.S.C. §362(c)(3)-(4), 11 U.S.C. §362(d)(4).

48) 11 U.S.C. §727(a)(8), 11 U.S.C. §1328(f).

49) 연방파산법상 개인채무자는 모든 종류의 절차(Chapter 7 · 11 · 12 · 13)에서 채권자와 면책의 대상이 되는 그의 채무의 변제를 재확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11 U.S.C. §524(c). 이는 파산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 후 변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파산면책의 이익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채무재확인합의(Reaffirmation Agreements)’라 한다.



⑥ 주거용 부동산(주택)에 대한 집행면제(Homestead Exemption)의 제한,⁵²⁾ ⑦ 면책의 전제조건으로서 채무자교육의 의무화(Mandatory Debtor Education),⁵³⁾ ⑧ Chapter 7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평가제도(Means Testing)의 도입,⁵⁴⁾ ⑨ 채무자의 변호사에 대한 책임가중,⁵⁵⁾ ⑩ (동산)담보채무감액에 대한 추가제한,⁵⁶⁾ ⑪ 변제계획의 기간확대⁵⁷⁾ 및 ⑫ 비면책채권의 추가⁵⁸⁾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 중 연방관재인이 관여하는 사항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1)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의무화

2005년 개정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가 채무자에게 도산신청 전에 신용상담을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즉, 개인채

무자는 절차신청 전 180일 이내에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관(Non-profit Credit Counseling Agency)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브리핑(briefing)을 받지 않으면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⁵⁹⁾ 여기서 '브리핑'은 이용 가능한 신용상담의 기회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재정분석 및 변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당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채무자는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때에 제521조 소정의 채권자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면서 신용상담기관으로부터 제109조 제(h)항에 따른 신용상담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명서 및 당해 신용상담기관의 관여하에 작성된 채무변제계획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⁶⁰⁾

다만, 법은 이러한 도산신청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신용상담에 예외를 인정하여 ① 채무자가



50) 11 U.S.C. §524(c)(2), 11 U.S.C. §524(k)(3)~(8), 11 U.S.C. §524(m).

51) 11 U.S.C. §523(a)(2)(C), 11 U.S.C. §523(a)(8)(A)(2), 11 U.S.C. §523(a)(5).

52) 집행면제재산에 관하여 연방도산법은 독자적인 규정을 두면서도 주법에 의한 연방도산법의 적용배제(Opt Out)를 인정하고 있다. 11 U.S.C. §522(b). 따라서 채무자가 더 많은 집행면제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이른바 '관할쇼핑(Venue Shopping)' 이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주택면제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제한을 가하였다. 11 U.S.C. §522(b)(3), 11 U.S.C. §522(o)~(q).

53) 11 U.S.C. §727(a)(11), 11 U.S.C. §1328(g)(1)~(3).

54) 11 U.S.C. §707(b).

55) 개정법률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Chapter 7 도산사건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새로운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변호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책임은 연방파산규칙(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 제9011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을 개정을 통해 연방법률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 U.S.C. §707(b)(4)(A)~(D) 참조.

56) 11 U.S.C. §1325(a).

57) 11 U.S.C. §1325(b).

58) 11 U.S.C. §523(a)(1)~(3).

59) 연방관재인이 승인한 상담기관은 [http://www.usdoj.gov/ust/eo/bapcpa/ccde/cc_approved.html]에서 주별로 찾아볼 수 있다.

60) 11 U.S.C. §521(b)(1),(2).

거주하는 지역의 신용상담기관이 도산신청에 필요한 신용상담을 구하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판단하는 경우⁶¹⁾와 ② 법원이 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무능력(incapacity), 신체장애(disability) 또는 교전지역에서의 군복무를 이유로 신용상담에 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에 선행하는 신용상담이 없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⁶²⁾

(2) 채무자교육(Debtor Education)의 의무화

개정 연방도산법은 채무자가 Chapter 7 또는 Chapter 13 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파산신청의 접수 후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재정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에 관한 교육과정(Instruction Course)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³⁾ 다만, 상술한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이 면제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인정되어, ① 법원이 채무자의 무능력, 신체장애 또는 교전지

역에서의 군복무를 이유로 교육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②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가된 교육과정이 개인 채무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연방관재인(U.S. Trustee)이 판단하는⁶⁴⁾ 경우에는 위 교육과정의 이수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⁶⁵⁾

(3) Chapter 7 신청의 남용방지를 위한 재산평가제도(Means Testing)의 도입

종전에 제707조 제(b)항은 Chapter 7의 면책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채무와 관련하여 개인인 채무자가 제기한 Chapter 7에 따른 도산신청이 '상당한 남용(Substantial Abus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개정에서 제707조 제(b)항은 '상당한(Substantial)'이라는 위 요건을 삭제하고, 법원은 직권에 의해 또는 연방관재인(U.S. Trustee), 도산관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개인 채무자에게 Chapter 7의 구제를 수여하는 것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61) 연방관재인은 결정 후 1년 이내에, 또 최소 연 1회, 그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11 U.S.C. §109(h)(2)(B).

62) 11 U.S.C. §109(h)(2),(4). 이밖에, 긴급한/급박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대하여는 11 U.S.C. §109(h)(3) 참조.

63) 11 U.S.C. §727(a)(11), 11 U.S.C. §1328(g)(1).

64) 이 경우에도 연방관재인은 결정 후 1년 이내에, 또 최소 연 1회, 그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11 U.S.C. §727(a)(11), 11 U.S.C. §1328(g)(3).

65) 11 U.S.C. §727(a)(11), 11 U.S.C. §1328(g)(2).



에는, 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동의하에 사건을 Chapter 11 또는 Chapter 13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⁶⁶⁾

나아가 법률은 Chapter 7상의 ‘남용(Abuse)’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법원은 채무자를 구제하기 전에 우선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조사해야만 하게 됨으로써

Chapter 7 절차에서 재산평가제도(Means Testing)의 도입은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⁶⁷⁾

김 범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66) 11 U.S.C. §707(b)(1).

67) 채무자의 장래소득은 채무자의 과거소득의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